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. 9. 21 선고 2023가단1075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8. 10.

판 결 선 고 2023. 9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21. 2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. 2. 10. 접수 제173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9. 7. 10. 그랜저 자동차를 40,400,000원에 취득하여 주식회사 E(이하 'E'라고 한다)와 48개월 동안 매월 8일에 651,237원씩 렌탈료를 지급하고, 연체시 연 24%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기렌터카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E의 대표이사 D는 위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D는 2021. 2. 9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21. 2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
다. 원고는 E가 위 렌탈료를 연체하여 2022. 6. 13.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, 2023. 3. 22.까지의 중도상환금은 11,081,511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중도상환금 11,081,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. D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.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,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3. 판단

먼저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(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22. 6. 13. E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).

다음으로 D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경희

별지

별 지 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군포시 아파트[도로명주소] 경기도 군포시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번호

구조및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

84.929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군포시

대 2361.9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361.9분의 33.466

